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nti-corrup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 Focused on the Anti-Graft Act and New Employees

김 용 래(Kim, Yong Ra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how the efforts of our society, focusing on the anti-graft law and new employees, affect the fair society. First of all,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s showed a high rate of perceived corruption in our society, with only 20% of positive responses to our efforts to establish the anti-graft law in a stable manner. Second, our society's efforts we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anti-graft law and the fair society, but had no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Third, awareness of the anti-graft law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Fourth, the recognition of the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fair societ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negative perception and difficulty of internal reporting in our society as the new employees see it. Fifth, our society's efforts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anti-graft law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air society, and the understanding of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have been shown to have a low influence on the fair society but indirect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ur society should make more efforts such as promoting related systems for anti-corruption and introducing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nti-graft law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climate that anyone who reports corruption can be protected safel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ly analytic case of how much our society is trying to realize fair society through the recognition of anti-graft of new employe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graft law.

Key words: New employees, Social effort, Awareness of anti-graft law, Corruption reporting system, Fair society

^{*} 익명의 세분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철도공사 청렴부장, 부동산경제학박사, yongrae5521@daum.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1)이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이유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법 제정 취지를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 정주의로 인한 부정부패 연결고리 차단과 직무관련성 ·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 능하도록 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 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랑한 공직자등을 보호하는데 있다.2) 역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새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과제로 삼아 부 패 척결에 모든 힘을 쏟았고,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부정부패 적폐정산'을 국 정과제 제1순위로 삼아 추진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반부패ㆍ청렴 성적은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에 의하면 2017년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³⁾는 세계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으나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그 동안 변동 추세를 보면 2002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수준과 유사하다. 국민권익위의 2017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2018)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66.8%)하고 있으며, 일반국 민들은 기업인, 전문가보다 우리사회가 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통계청의 한국인의 사회동향(2017)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일반국민5)의 62.3%가 공직자 의 부패가 심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와 같은 수치는 2000년 75.6%에서 2009년 42.1%까지

¹⁾ 추진배경에는 크게 헌법적 가치의 실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우리사회의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p.14-18.

²⁾ 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p.21.

³⁾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로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발표하였다.

^{4) 2002}년 CPI 점수는 43점으로 2008년도는 56점으로 상승세이나 이후 2017년까지 53점에서 56점 사이 정체상태이고 2017년도는 54점이다.

⁵⁾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⁶⁾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하여 '약간 심각하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한국행정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공직자에 대한 부패인식도 살펴보면 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한국행정연 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2016년 기준)에서 20~30대 젊은세대의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률이 높았으나, 연령대가 50~60대로 올라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률이 떨어졌다.7)

2016. 9월에 시행되어 이제 2년이 좀 경과된 청탁금지법은 반부패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서 큰 전환점으로 현재의 젊은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향후 이 법과 운명을 같이 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젊은세대가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계종사자를 대상⁸⁾으로 청탁금지법 체감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일반국민은 75.3%가, 공무원은 92.6%가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국민은 74.5%가 공무원은 91.1%가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반부패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이 일반국민 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탁금지법 관련 선행연구도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반부패인식에 대하여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이 되어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 이끌어 갈 주인공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세대부터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젊은 세대인 신입사원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 인식을 통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청렴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사회가 반부패 청렴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발전해야 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2016. p.97.

^{7) 20}대는 3.2점, 30대는 3.18점, 40대는 3.10점, 50대는 2.98점, 60대는 2.97점으로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각한 것을 나타난다.

⁸⁾ 조사대상자는 일반국민은 1,000명, 공무원 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3명, 교원 408명, 언론사 임직원 200명, 영향업종 종사자 602명(음식업종 202명, 농수축산화훼 400명)이다. 권익위, 「청탁금지법시행 2년-국민 10명 중 8~9명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보도자료, 2018. 9.21. pp.1-2.

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8년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하고 아직 발령을 받지않은 예비 사회인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임용 전 신입사원 교육기간인 2018. 11.23.부터 12.4사이 오프라인으로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젊은 세대인 신입사원이 체감하는 청탁금지법과 부패신고제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정사회 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신입사원인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부패신고제도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공정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가설 검증 형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임용대기중인 신입사원은 예비 사회인으로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체계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은 직장인과 달리 있는 그대로의 지식과 수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체감도 조사에 적합하였다. 설문조사의 변수및 측정문항은 문헌연구와 기존 선행연구 그리고 자체연구를 통하여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초통계, 측정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구조방정식의 경로분석을 통하여 시행하였으며 SPSS.18.과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부패(腐敗)의 개념

부패는 기본적인 인간의 행태와 관련이 있다. 정정목(2017)은 부패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태이며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행태가 지배한다. 인간의 속성은 내면적이지만 독립적이지 않고 인간은 사회나 제도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패는 인간의 내적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행태라고 하였다. 그 동안 부패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존재하고 학자들마다 부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는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시대와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부패에 대한 보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Heidenheimer and Johnston(2002)은 부패가 나라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각 나라마다 법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큰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부패가 공공의 이익이나 여론에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양천수(2015)는 부패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추상성이 강한 개념이라 하였다. 이렇게 부패의 대한 개념은 시대가 처한 환경에서 인간이 행한 행위나 활동과 관련이 있어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부패의 개념 정의는 학문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부패에 대한 개념의 학문적 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정의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의 부패 개념을 정의한 사람은 Nye로 볼 수 있다. Nye(1967)는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사적인(개인의 친인척의 지인) 이익(부나 지위면에서)을 위하여 공직자의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⁹⁾하고 정의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부패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논의보다는 법률적 개념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부패에 대한 규정과 처벌은 일반적인 형법과 반부패 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부패를 규정하는 것은 주로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무원 및 공무원에 의제되는 전통적인 뇌물수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하고 있고 부패에 관한 특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는 부패행위에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의 정의는 부패의 개념인학문적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김진영, 2017). 공직자 윤리법에서도 부패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는데, 제2조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부정한 특혜 또는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퇴직공직자의 재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패의 개념과 청렴의 개념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청렴(淸廉)이란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가 업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을 것,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렴의 의미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청렴의 의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온정 연고주의 배척한 공정한인사업무, 공익을 추구하여 국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정주(2016)는 반부패(anti-corruption) 개념과 청렴(integrity)의 개념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반부패는 주로 공직가치 중 합법성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적이면서 사후통제적인

⁹⁾ corruption is behaviour that deviates from the formal duties of a public role (elective or appointive) because of private regarding (personal, close family, private clique) wealth or status gains (Nye 1967:416)

측면이 강한 반면, 청렴은 반부패 의미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긍정적 가치로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렴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로 여러 주체들이 서로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어가려는 의미가 강해 정책 순응이 높다고 하였다. Warren(2004)도 현대적 의미의 부패는 규정이나 법률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였고 확실한 것은 내적인 청렴(integrity)여부보다는 행위와 그 결과를 대상으로 부패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2. 청탁금지법 이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3. 8. 5.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정무위원회의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2015. 3. 27. 제정·공포된 이후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점인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이 곤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던 사안이나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는 규제가 곤란했던 사안 등에 대하여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고,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법 적용대상자도 확대하여 공직자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및 각급학교는 장과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는 대표자와 임직원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속지주의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법조문은 크게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제1장은 총칙을, 제2장은 부정청탁금지등을, 제3장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등과 징계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표 1〉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구 성 요 건	제재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세세구판	
이케다시키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없음	
이해당사자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p. 102.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해서는 법 제5조에서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4개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10)을 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였다. 부정청탁 위반행위에 대한제재는 법 조문 제21(징계) 내지 제23조(과태료 부과)에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은 위반시필요적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사안과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규정을 하고 있다. 공직자등은 동일 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를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 형 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수수할 경우에는 2배에서 5배 사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는 같은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등과 별도로 내부적으로 필요적 징계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8조 3항에는 예외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는 근거11)를 마련하였다. 위 예외적인 조항은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석의 큰 어려운 점은 없으나, 제2항 2호 즉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사교, 부조,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수수할 수 있는 조항과 제8호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범위는 법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를 받을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서

¹⁰⁾ 법 제5조에는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1. 인·허가 처리 관련,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3.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9. 공공기관의 재화·용역·매각·교환 등 관련, 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11. 병역판정검사·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으로 14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¹¹⁾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적인 사유는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게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점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다.

는 1회 100만원 이하 금액을 수수할 수 없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하나인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개념이다. 마정근(2016)은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의 불확실한 개념의 사용으로 법에 따라야 하는 적용대상자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 어디까지로 봐야하는 지 사안마다판단이 다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이러한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여 법에 순응해야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가액 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예시로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가액기준 이하로 선물을 받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사회상규라고 함은 법질서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금품등을 의미하며,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여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된 금품등 위반행위 발생시 공직자등에게 신고 의무와 반환 및 거절 등 절차를 두어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고 있다.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필요적으로 제외하여 공직자등을 보호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등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를 보호·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법13조(위반행위의 신고등), 제15조(신고자의 보호·보상), 제22조(벌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각각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선행연구의 고찰과 차별성

반부패에 대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 등 특정집단의 인식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덕로 외(2016)는 정부부패와 반부패행위에 관한 국민적 인식분석에서 넓게는 공직자, 좁게는 행정부 대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는 매우 부정적이며부패공직자의 처벌에 대한 인식도도 역시 긍정적이지 않아 청탁금지법 발효에 즈음하여 보다 강력한 반부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자성(2014)은 경상남도 공무원의 청렴도 인식 연구에서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관대한 인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후 청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익명성보장 내부고발제도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제언하였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 인식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박기효 외(2017)는 '김영란법' 시행이 한국 언론윤리에 미친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3·5·10만원'의 규제에 대하여는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영란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취재환경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김영란법'으로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보도원칙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화연(2017)은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 연구에서 교원들은 교육분야 청렴성은 비교적 높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나 업무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성역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일환 외(2017)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수수 등의 처벌 기준금액과 신고 방법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상 규정한 처벌 기준에는 동의하면서 식사, 선물 등 '3·5·10만원'에 대하여는 좀 더 관대한 입장을 보였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처벌 기준에 있어서 더 허용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고방법에 있어서는 기명보다는 무기명을, 신고 방식은 메일, SNS 등 전자매체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반부패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반부패 제도의 강화나 정책적인 조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 국민 들의 인식의 변화는 긍정적이며, 향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법인식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사회는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연구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체적 내용('3·5·10만원'의 규제 등)에 대한 접근은 있었으나, 우리사회의 역할이나 책임, 부패신고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거시적인 접근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관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첫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반부패 인식도 변화 조사 대상자를 젊은세대가 주축인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한정하였다. 그 동안 연구대상자는 주로 일반국민이나 공무원이었다. 일 반국민은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대표성이 있으나, 특정 연령대 즉 젊은 층의 목소리가 반영

된 연구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법 시행에 대한 호 의적인 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여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부패에 대한 관대한 영향을 보임을 따라 젊은세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 성과 젊은세대들의 반부패 인식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신입사원이 젊은세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신입사원을 통하여 젊은세대의 인식을 옆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우리 사회노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실증하였다. 그동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회귀분석을 통한 단편적 인과관계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한 변수 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셋째, 변수의 다양화이다. 공정한 사회가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그리고 자정작용의 부패신고제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구조방정식의 이해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이란 특정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 이론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증적인 형태의 모형에서 상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와 그 유의성을 검정하는 모형을 말한다. 구조방정식에서는 단편적인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 계에서 벗어나 다수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 인과관계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회귀분 석 및 요인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측정오차를 무시하였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측정오 차를 포함하여 분석하여 추정값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정확한 분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구조방정식 모형은 직접효과 외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이 가능하여 변수 사이들 간에 좀 더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구조 모델(covariance structural model)이라고도 불리우며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를 사용한다. 잠재변수는 실제로 측정 또는 관찰되지 않은 개념상의 변수로 관측변수로부터 간접적으로 측정된다. 관측변수는 실제로 설문 또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에 의해 관측 또는 측정되는 변수를 말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생성하는 경로모형과 잠재변수를 생성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성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적 조사에 근거하여,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사전에 가정 및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구조

를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 확인적 요인분석이 구조방정식의 모델이 다른 모델과 기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다른 다변량 기법들은 관찰치 측정치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와 관찰변수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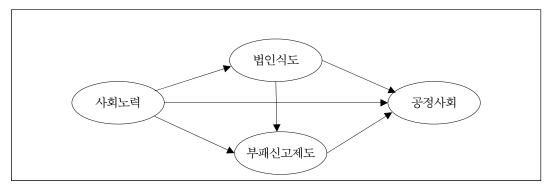
특히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설정하여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므로 복잡한 이론적 구조를 분석 할 수 있으며 쌍방적 인과관계, 순환적 인과관계 등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여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델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도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이희연·노승철, 2017)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2.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젊은세대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우리사회가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사회노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부패신고제도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대한 인식도를 통한 분석이 주된 목적이다. 2016. 9. 28.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그 간 정부나 공공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법 도입 제도 취지, 부정청탁 및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 법 내용과 법 위반시 처벌내용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우리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청탁금지법 내용과 부패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크게 2단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설문항목의 빈도분석을 통하여 신입사원들의 반부패 인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¹²⁾를 참고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서 변수는 크게 '사회노력', '청탁금지법 인식도', '부패신고제도' 그리고 '공정사회' 4개의 카테고리의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사회노력'은 외생변수로 나머지'법인식도', '부패신고제도', '공정사회'는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변수 간 영향력을 확인하는 유의성 검증과 변수 간 총효과, 직접,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의 변수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 <그림 1>과 <표 2>와 같다.

¹²⁾ 안춘복·윤대혁(2013)은 윤리경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의 내부고발 의지와 고객의 기업이미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음.



〈그림 1〉연구 모형

〈표 2〉연구가설

<가설1>	<1-1> 사회노력은 청탁금지법 인식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사회노력은 부패신고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회노력은 공정사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x \ 0>	<2-1> 청탁금지법 인식도는 부패신고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2-2> 청탁금지법 인식도는 공정사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3 >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4 > 사회노력과 공정사회 간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설정과 측정항목

앞서 언급한 4개의 카테고리인 '사회노력', '법인식도', '부패신고제도', '공정사회'를 잠재변수로 정의하며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관측변수는 설문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잠재변수에 대하여 설명하면, '사회노력'은 청탁금지법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정도이고, '법인식도'는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부정청탁, 금품등 수수금지 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 '부패신고제도'는 신고매체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부패신고시스템을, '공정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부패행위 근절과 우리 사회의 청렴도 수준이다. 관측변수로는 '사회노력'과 '법인식도'는 2개 문항을, '부패신고제도'는 3개 문항을 그리고 '공정사회'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변수의 설명 및 측정항목에 대하여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측정문항의 출처는 선행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문항 및 자체연구이며,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총 설문 문항은 선호도 1개 문항(청탁금지법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주관식 1개 문항(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타 의견)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설문 3개 문항을 포함하여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 변수의 설명 및 측정항목

잠재변수	설 명	측정항목(관측변수)	출 처	
1 =1 =1	청탁금지법 안정적인 정착을 위	청탁금지법 정착노력	34141/00.00	
사회노력	한 우리사회의 노력 정도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와 제도 마련 적정성	권익위(2018)	
법인식도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에 대하	청탁금지법 세부내용	자체연구	
B U 7-	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도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사항	기계단기	
		부패행위 신고채널		
부패신고 제도	신고매체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부패신고시스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선행연구 -이선중(2013)	
n n		부패행위(금품 등) 목격시 적극신고 여부	-김용래(2017)	
		우리사회 부정청탁 관행		
		채용관련 부정청탁 관행	 선행연구	
==1.1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부패행위 근절과우리 사회의 청 렴도 수준	금품등 수수 관련 관행	-김용래(2017)	
공정사회		우리사회 청렴 수준	권익위(2018)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영향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 수행 지장 여부		

주 : 권익위(2018) 출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조사' 설문문항임.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에 설문조사는 총 350명 중 이상치 답변(9명)을 제외한 341명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징이 있다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전국적인 사업단위 조직과 남성 위주의 업무 등으로 인력구조 특성상 신입사원 선발이 남성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본 연구에 설문한 신입사원 임용대기자도 설문응답자의 89%가 남성이었다. 또한 20~30대는 전체 99.4%로,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전체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	구분 -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05	89.4	학력	고졸이하	35	10.3
성별	여자	36	10.6		대학교 졸	302	88.6
	20대	267	78.3		대학원(석사)	4	1.2
연령	30대	72	21.1		대학원(박사)	_	_
	40대 2 0.6		_	_	-		
Ž	총계	341	100	총 계		341	100

〈표 4〉 조사의 일반적인 특성

측정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보면 우리사회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노력과 관련한 제도 및 홍보 마련에 대하여 적정했냐는 질문에 응답자 341명 중 70여명 정도(21%)만 긍정적인 답변('보통이다' 답변 제외)을 하였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시행한 청탁금지법 체감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질문에 일반국민(75.3%)과 공무원(92.6%)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상당한 괴리를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통이다'를 제외한 88명(25.8%)만이 알고 있다고 하였고, 청탁금지법 위반시 법령상 처벌 내용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 중 37명(10.9%)만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채널(국민신문고 등)에 대하여는 50명(14.6%)이,신고자의 보호·보상제도에 관하여도 28명(8.2%)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부패신고제도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 등 관행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청탁 관행은 31명(9.1%)이, 채용비리 부정청탁 관행은 27명(8.0%)이, 금품등 수수 관련 관행은 38명 (11.2%)만 관행이 사라졌다고 하였고, 우리 사회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1명(12.1%)만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여 신입사원들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청렴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명/%)

					(명/%)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긍정적인 답변(보통 제외)
6	66	181	76	12	72
(1.8)	(19.4)	(53.1)	(22.3)	(3.5)	(21.2)
5	66	184	77	9 (2.6)	71
(1.5)	(19.4)	(54.0)	(22.6)		(20.9)
13	75	160	82	11	88
(3.8)	(22.0)	(46.9)	(24.0)	(3.2)	(25.8)
5	32	127	147	30	37
(1.5)	(9.4)	(37.2)	(43.1)	(8.8)	(10.9)
8 (2.3)	42	124	147	20	50
	(12.3)	(36.4)	(43.1)	(5.9)	(14.6)
4 (1.2)	24	83	189	41	28
	(7.0)	(24.3)	(55.4)	(12.0)	(8.2)
70	131	107	27	6	201
(20.5)	(38.4)	(31.4)	(7.9)	(1.8)	(58.9)
신분 노출 (71.4)	신고조치 미흡 (13.3)	신고절차 복잡 (9.5)	신고보상 미미 (3.8)	기타 (1.9%)	105명이 응답
-	31	85	161	64	31
	(9.1)	(24.9)	(47.2)	(18.8)	(9.1)
6	21	89	159	66	27
(1.8)	(6.2)	(26.1)	(46.6)	(19.4)	(8.0)
3 (0.9)	35	105	152	46	38
	(10.3)	(30.8)	(44.6)	(13.5)	(11.2)
5	36	122	159	19	41
(1.5)	(10.6)	(35.8)	(46.6)	(5.6)	(12.1)
18	152	140	26	5	170
(5.3)	(44.6)	(41.1)	(7.6)	(1.5)	(49.9)
3 (0.9)	56	97	128	57	59
	(16.4)	(28.4)	(37.5)	(16.7)	(17.3)
방송등	온라인	집합	리플렛	공모전	기타
명상매체	홍보	교육	포스터	이벤트	의견
(28.0)	(22.6)	(16.1)	(11.6)	(11.0)	(3.3)
처벌강화, 교육강화, 홍보, 신고자 신변보호 등					- 등
성별, 나이 ,학력					
	1 등 (1.8)	1 등 다	고렇다 그렇나 보통 6 66 181 (1.8) (19.4) (53.1) 5 66 184 (1.5) (19.4) (54.0) 13 75 160 (3.8) (22.0) (46.9) 5 32 127 (1.5) (9.4) (37.2) 8 42 124 (2.3) (12.3) (36.4) 4 24 83 (1.2) (7.0) (24.3) 70 131 107 (20.5) (38.4) (31.4) 신분 신고조치 신고절차 노출 미흡 복잡 (71.4) (13.3) (9.5) - 31 85 (9.1) (24.9) 6 21 89 (1.8) (6.2) (26.1) 3 35 105 (0.9) (10.3) (30.8) 5 36 122 (1.5) (10.6) (35.8) 18 152 140 (5.3) (44.6) (41.1) 3 56 97 (0.9) (16.4) (28.4) 항송등 온라인 집합 당개체 홍보 교육 (28.0) (22.6) (16.1)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6 66 66 181 76 (1.8) (19.4) (53.1) (22.3) 5 66 184 77 (1.5) (19.4) (54.0) (22.6) 13 75 160 82 (3.8) (22.0) (46.9) (24.0) 5 32 127 147 (1.5) (9.4) (37.2) (43.1) 8 42 124 147 (2.3) (12.3) (36.4) (43.1) 4 24 83 189 (1.2) (7.0) (24.3) (55.4) 70 131 107 27 (20.5) (38.4) (31.4) (7.9) 신분 신고조치 신고절차 신고보상 노출 미흡 복잡 미미 (71.4) (13.3) (9.5) (3.8) - 31 85 161 (9.1) (24.9) (47.2) 6 21 89 159 (1.8) (6.2) (26.1) (46.6) 3 35 105 152 (0.9) (10.3) (30.8) (44.6) 5 36 122 159 (1.5) (10.6) (35.8) (46.6) 18 152 140 26 (5.3) (44.6) (41.1) (7.6) 3 56 97 128 (0.9) (16.4) (28.4) (37.5) 항송등 온라인 집합 리플렛 본상대체 홍보 교육 포스터 (28.0) (22.6) (16.1) (11.6)	그렇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전체 34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0명(49.9%)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이는 앞서 권익위 설문 조사시 일반국민은 74.5%가, 공무원은 91.1%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다소 낮지만 절반이상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패행위(금품등) 목격시 응답자의 201명 (58.9%)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강한 신고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청탁금지법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방송 등 영상매체(28.0%), 온라인홍보(22.6%), 집합교육(16.1%), 리플렛·포스터(11.6%)순으로 응답하였고, SNS, 영상매체가 전체의 50.6%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IT에 친숙한 젊은세대들의 세태가 반영된 것으로보인다. 본 설문조사에 빈도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3가지 측정항목(청탁금지법의 세부대용, 부패행위 목격시 적극신고여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20%이하로 우리사회 대한 부패인식률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단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 측정에서 20~30대 젊은세대의 부패인식률이 다른 연령대부터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측정모델의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측정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측정모델의 핵심은 측정변수들이 어떻게 잠재변수를 정의하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이란 측정변수들이 얼마나 잠재변수를 잘 나타내고 있는 가를 검정하는 통계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모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는 것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14)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델을 시행하기 전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측정모델의 적합성 검증은 크게 절대지수적합, 증분지수적합, 간명지수적합지수로 평가를 하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가 기준치 이상을 만족해야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15) 측정모델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으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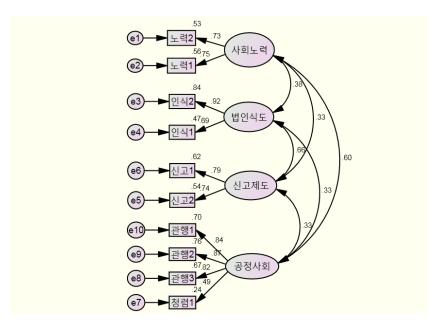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당초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13개 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¹³⁾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본 연구 설문조사에는 없으나, 본 연구자는 조직내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시 신입사원들은 법 내용(금품등 수수금 지 적용기준 등)과 위반사례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¹⁴⁾ 이희연·노승철, '고급통계이론-이론과실습」, 경기 : 문우사, 2017. p.743.

¹⁵⁾ 허준, 「Amos 구종방정식 모형」, 서울 : 한나래출판사, 2016. p.181.

및 측정모형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나, 일부 변수에서는 타당성이 기준치 이하로 나와 3개 문 항¹⁶⁾을 제외하고 최종 10개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보면 사회노력↔공정사회가 .60, 법인 식도↔부패신고제도가 .6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잠재변수 간에 상관계수는 .5이하로 나왔다. 측정모델에 대한 적합성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검정량 p= .111, GFI= .978, AGFI= .958로 나왔고, 증분적합지수인 NFI= .971, 간명적합지수인 PNFI= .626, AIC= 90.527로 나와 모든 지표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증결과가 도출되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로 판명되었다.

(# 0/ ±04 48± 64 54							
지수성격	절대적합			증분적합	간명적합		
	X^2 카이제곱	GFI	AGFI	NFI	PNFI	AIC	
모형값	p = .111	.978	.958	.971	.626	90.527	
평가기준	P값이 0.05이상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적합모형		0~1사이	0에 가까울수록		

〈표 6〉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¹⁶⁾ 측정모델에서 제외된 3개 관측변수는 부패행위 목격시 적극신고 여부, 청탁금지법의 우리사회의 궁정적인 영향,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여부 항목이다. 특히 잠재변수인 공정사회에 관측변수가 다른 잠재변수보다 관측변수가 많아 적합성이 떨어졌다.

또한 측정모델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정결과 다음의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성은 개념, 수렴, 판별타당성에 있어서 모든 지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신뢰도 검증도 Cronbach의 알파값이 0.6이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7〉확인적 인자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결과

개념타당성			수렴대	타당성	신뢰도
관측변수	잠재변수	Estimate	CR ¹⁷⁾	AVE ¹⁸⁾	Cronbach의 알파
노력1 ←	사회노력	.746	.705	.545	705
노력2 ←	사회노력	.730	.705	.545	.705
인식1 ←	법인식도	.689	701	.659	.775
인식2 ←	법인식도	.918	.791		
신고1 ←	신고제도	.788	720	.582	.734
신고2 ←	신고제도	.737	.736		
	공정사회	.839			
관행2 ←	공정사회	.869	040	.592	007
관행3 ←	공정사회	.818	.848		.837
청렴1 ←	공정사회	.491			
7]-		0.5이상	0.7이상	0.5이상	0.6이상

〈표 8〉 측정항목 간 상관관계(결정계수) 분석결과

구 분	사회노력	법인식도	신고인지	청렴사회
사회노력	.545*			
법인식도	.147	.659*		
신고제도	.111	.433	.582*	
공정사회	.359	.110	.112	.592*

주: * 분산추출지수(AVE)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표준화 회귀계수값은 하나만 제외19)하고는 모두 0.5 이상을 상

¹⁷⁾ CR: Construct Reli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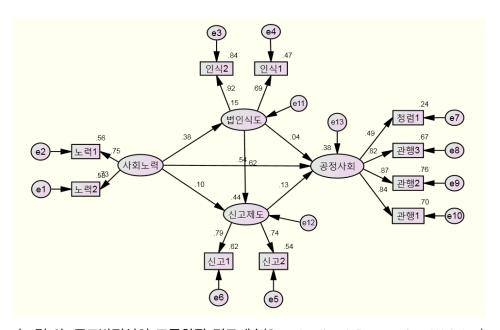
¹⁸⁾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¹⁹⁾ 공정사회(잠재변수)와 청렴1(관측변수) 간 표준화 회귀계수값이 0.491로 기준치인 0.5에는 약간 못 미치기는 하나 전체적인 모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하였고 수렴타당성을 나타내는 CR과 AVE도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였다. 판별타당성을 나타내는 잠재변수간 결정계수(상관계수2)값도 잠재변수 AVE보다 작게 나와 판별타당성 역시 충족되었다.

3. 가설 검증 및 결과해석

앞서 본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측정모델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다음 <그림 3>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3〉 구조방정식의 표준화된 경로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분석 결과, 잠재변수들 간의 회귀 가중치들의 유의수준을 보면 사회노력 → 법인식도(표준화계수 .384), 사회노력 → 공정사회(표준화계수 .540), 법인식도 → 부패신고제도(표준화계수 .621)는 p=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잠재변수 간(사회노력→부패신고제도, 법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 →공정사회)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노력은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공정한 사회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가설 1-1, 1-3), 이는 젊은세대인 신입사원들은 우리 사회의 노력이 높다고 생각하면 청탁금지법 이해도가 높아지고 공정한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들은 청탁금지법 인식도가 높아지면 부패신고제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1)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가설 1부터 3>까지 검증되었으며,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Estimate 가설 경로 S.E C.R P값 채택여부 (비표준화계수) <가설1> 법인식도 .100 5.319 .000 채택 .531 ← 사회노력 1-1신고제도 1-2 .103 .080. 1.286 .199 기각 ← 사회노력 공정사회 1-3 .386 .069 5.640 .000 채택 ← 사회노력 <가설2> 신고제도 .484 .071 6.777 .000 채택 2-1 ← 법인식도 공정사회 2-2 .022 .045 .490 .624 기각 ← 법인식도 공정사회 <가설3> .084 .060 1.387 .165 기각 ← 신고인지

〈표 9〉 가설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한편 잠재변수들 간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간접효과의 유의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BC법²⁰⁾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노력이 부패신고제도와 공정사회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 .05에서 유의하지만 청탁금지법 인식도가 공정사회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결과(BC법)

구 분	사회노력	법인식도	신고제도	공정사회
법인식도	_	_	_	_
신고제도	.005***			
공정사회	.020**	.161		

주: *** p < .01, ** p < .05 유의

또한 사회노력이 공정사회에 미치는 간접효과보다는 부패신고제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노력이 공정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

²⁰⁾ 붓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시 유의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과 PC(Percentile)법이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는 사용자의 선택이나 일반적으로 편의(bias)를 많이 보정한 BC법 사용을 권장한다. 허준,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 래출판사, 2016. p. 154.

있어서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연구가설 4>을 인용할 수 있다.

다음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도출된 잠재변수들 간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이다. 공정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회노력(.599)이며 청탁금지법 인식도(.121)나 부패신고제도(.126)는 낮은 수준의 영향력으로 비슷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변수들이 공정사회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사회노력이 절대적으로 영향(.540)을 미치고 있고, 간접효과(.059)는 미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노력이 부패신고제도에 미치는 총효과(.334)중 간접효과(.239)가 직접효과(.095)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법인식도가 부패신고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621)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구 분 사회노력 법인식도 신고제도 총 효과 .599 .121 .126 공정사회 직접효과 .540** .043 .126 간접효과 .059** .078 총 효과 .384 법인식도 직접효과 .384** 간접효과 총 효과 .334 .621

.095

.239***

.621**

〈표 11〉 구조모델에서 산출된 표준화된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주: *** p < .01, ** p < .05 유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고제도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젊은세대인 신입사원들에 대한 반부패 인식도 조사이다. 첫째, 신입사원들은 우리 사회의 노력이 높다고 인식되면 청탁금 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패신고제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청탁금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했다고 하나, 신입사원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아직 부패신 고에 대한 절차나 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이나 홍보가 아직은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 리 사회노력은 신입사원들의 청탁금지법 인식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부 패신고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다.

둘째, 신입사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인식도가 높으면 부패신고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고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신고에 대한 처리 및 보호·보상 관련내용

이 규정²¹⁾되어 있는 관계로 법 지식의 증가는 부패신고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당 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셋째,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청탁금지법 인식도도 공정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간접효과가 없었다. 이는 앞서 빈도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탁금지법과 부패신고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신입사원들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59%는 부패행위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나머지 응답자 40%중 2/3(71.4%)는 신분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내부 신고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직내부의 부패신고시 조직 내 냉대 및왕따 등 조직의 폐쇄성, 신고 후 신변 불안 등은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신고 친화적인 문화가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부패행위에 대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반부패 관련법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론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로 폐쇄적인조직문화가 하나의 장벽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공정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한 사회에 낮은 영향력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좀 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느끼는 청탁금지법 체감도와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젊은세대를 대표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향후 젊은세대들은 기존세대와 달리 향후 청탁금지법과 더블어 같이 대한민국의 공정사회를 이끌어 갈 세대이다. 이제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갓 2년이 지났다. 많은 국민들이 법 시행을 찬성하며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부 젊은 층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빈도분석에 보았듯이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관행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9%만 긍정적인 답하는 등 우리사회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반부패 인식에 대하여 청탁금지법과 공기업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노

²¹⁾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신고의 처리) 및 제15조(신고자의등의 보호·보상) 에는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신고자보호, 그리고 보상금,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력이 공정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이해도와 부패신고 제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항목을 통한 빈도분석 결과, 청탁금지법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의 사회의 노력이나, 청탁금지법과 부패신고제도의 이해수준 그리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이 3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20%대로 우리사회 높은 부패인식율과 반부패에 대한 냉소주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변수 간 영향력 유의성 검증에서는 우리 사회노력 은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공정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패신고제도 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 신입사원들이 체감하는 부패신고제 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부패신고제도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 지법의 인식도와 부패신고 제도는 공정한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 신고의 어려움 등 신 고에 따른 왕따 등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의 안 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공정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한 사회에 낮은 영향력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 더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깨끗한 우리사회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세대, 예비 사회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이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에 의하면 50대 과제 하나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과제가 있다. 위 과제는 영유아·청소년 예비사회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청렴인식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교양과목이나 예비 사회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기적인 청탁금지법 과정 개설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청탁금지법의 장벽을 낮추고 부패신고에 대한 사회적 풍토 조성과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에 대한 신고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IT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방송매체 및 온라인을 활용한 공익방송,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동영상 등 좀더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미래세대, 예비 사회인을 대상으로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청탁금지법을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취업을 앞둔 예비 사회인들이 체계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나 시스템은 마련되어 않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젊은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우리사회가 좀 더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고 궁극적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성별 비율에 있어서 남성비율이 여성비율보다 많아 다양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점과 연구대상 표본을 신입사원들로 한정하여 젊은세대의 전체를 대표할 수없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그 다음으로 측정문항의 한계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체감도 조사문항을 인용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측정문항을 구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 이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기업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젊은세대들의 반부패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으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공일환·이미선·조은경. (2017). "반부패 법률상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4). 25-50.
- 공직자윤리법 (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국민권익위원회. (2018).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2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국민권익위원회. (2017). 「부패인식도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국민 10명 중 8~9명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보도 자료 2018. 9. 21.
- 김용래. (2017). "공공부문 부패방지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29. 5-31
- 김진영. (2017). "부패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2(4). 81-100.
- 마정근. (2016).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방안". 「한양법학」, 27(4). 167-199.
- 박기효·홍성완·신태범. (2017). "'김영란법' 시행이 한국 언론윤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인의 법인식 및 법 시행후 보도원칙 준수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5). 165-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17호)
- 서울신문.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법정구속...금융권의 후폭풍은". 보도자료, 2019. 1. 12.
- 세계일보. "대구시교육청, 사학재단 채용비리 관련자 6명 수사의뢰". 보도자료. 2019. 1. 16.
- 안춘복·윤대혁(2013),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도가 내부고발의지, 기업이미지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 제3호.
- 이덕로·송기형. (2016). "정부부패와 반부패행위에 관한 국민적 인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111-135.
- 이선중. (2013).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4). 169-187.
- 이자성. (2014).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인식에 관한 연구-공무원 집단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1(5). 203-225.
- 이정주. (2016). "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1). 99-122.
- 이희연·노승철. (2017). '고급통계이론-이론과 실습」, 경기: 문우사.
- 정부관계기관합동. (2018).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정정목. (2017). "부패와 신이중혁명". 「한국부패학회보」, 22(4). 45-59.
- 통계청. "한국인의 사회동향 2017". 보도자료. 2017. 12. 17.
- 한국행정연구원. (2016). 「사회통합실태조사」.
- 한국행정연구원. (2016).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한화연. (2017). "공직윤리 확보방안으로서의 청탁금지법 인식에 관한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 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천수. (2015). "민사법의 구조변동과 부패 개념의 변화 :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한국부패학회보』, 20(4). 29-52.
- 허준. (2016).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 한나래출판사.
- Heidenheimer, A, and M, Johnston (2002). Political corruption: concepts & contexts. 3rd ed.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Nye, J. S. (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2). 417-427
- Warren, M. (2004), "What Does Corruption Mean in a Dem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328–343.

투고일자 : 2019, 06, 06 수정일자 : 2019, 06, 28

게재일자: 2019, 06, 30

<국문초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김용래

본 연구는 반부패 인식에 대하여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부패제도 이해와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설문항목을 통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나, 공정사회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이 20%대로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률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노력은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패신고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는 부패신고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 신고의어려움 등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노력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탁금지법 이해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낮은 영향력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사회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등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신입사원의 반부 패 인식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공정사회 실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신입사원, 사회노력, 청탁금지법 인식도, 부패신고제도, 공정사회